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76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서명옥・고동진・유상범

백종헌 • 조정훈 • 박준태

김예지 • 주호영 • 김기현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 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 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3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정된 가정환경"을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신속히 가정으로"를 "그 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게 된 때에 아동이 가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 여 아동의 성장·보호를 위한 지원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정"을 각각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을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가정방문과 대면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면접·관찰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이 경우아동학대행위자는 대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제1호의3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 이념) ① (생 략)	제2조(기본 이념) ① (현행과 같
	<u>수</u>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②
인격발달을 위하여 <u>안정된 가</u>	안전하고
<u>정환경</u>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안정된 가정환경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③
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	
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	
호할 경우에는 <u>신속히 가정으</u>	<u>그 아동의 가</u>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야 한다. <u><후단 신설></u>	<u>갖추게 된 때에 아동이 가정으</u>
	<u>로</u>
	<u>이 경우 국가와 지방</u>
	자치단체는 아동의 복리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성

④ ~ ⑦ (생 략)

-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 1. (생략)
 -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u>가정</u>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 의 <u>가정</u>에 위탁하여 보호·양 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 6. (생략)

② ~ ① (생 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 등) ①·② (생 략)

장·보호를 위한 지원 또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15조(보호조치) ①
1. (현행과 같음)
2
안전하고 안정된 가
<u>정</u>
3
<u>안전하고 안정된 가정</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 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 ·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 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 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 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담 · 교육 ·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저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u>복리</u>
에 반하지 아니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
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인
<u>정되면</u>
④·⑤ (현행과 같음)
∥28조(사후관리 등) ①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
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② (생략)<신 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u>제28조제3항을</u>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정하는	기간	동안 팀	반드시	가정
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하ㅇ	를 아
동학대	재발	여부틑	를 확인	하여
야 한디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면접・관찰 등을 할 수 있다.

<u>4</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28조제4항을</u>-----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 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 4. (생 략) ④ (생 략)

1의4.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